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노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않는 경우 또는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이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7776호, 2020.12.29. 공포, 2021.6.30.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 나목 중 “법 제61조의2제3항제2호”를 법 “제61조의2제4항제2호”로 변경하고, 사목 중 “법 제61조의2제3항제3호”를 “법 제61조의2제4항제3호”로 변경하고, 사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법 제39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노인 학대행위자	법 제61조의2제3항제1호	150	300	300
아. 법 제3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피해 노인의 보호자·가족	법 제61조의2제3항제2호	150	300	300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2. 개별기준		2. -----		
가. (생략)		가. (현행과 동일)		
나. 법 제3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1조의2제3항제2호	25	50	75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458